연구용역계약서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위탁인 "로 칭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수탁인"이라 칭함)에게 "Seamless Gapfill Process 개발"을 의뢰하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수락하여 상호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1조 (계약의 내용) 위탁인과 수탁인이 진행하는 연구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용역의 이름	Seamless Gapfill Process 개발
연구용역의 기간	2016. 12. 01 ~ 2017. 06. 30 (7개월)
대상 장비	ALD Process module
연구용역의 범위	차세대 반도체 Seamless gapfill process용 inhibitor 물질 선정 및
	기초 deposition test
위탁인 연구 책임자	전 진 성
수탁인 연구 책임자	이 원 준

제 2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은 별첨의 연구계획서와 같고, 수탁인이 연구 완료 후 위탁인에 게 제공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는 연구 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 3조 (연구비)

위탁인이 수탁인에게 지급하는 연구 용역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 총 계약 금액: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부가세 별도)
- 1) 선급금: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부가세 별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지급
- 2) 중도금: 금 이천만원정 (₩ 20,000,000, 부가세 별도) 3월 01일~3월 31일 이내 현금 지급
- 3) 잔 금: 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부가세 별도)계약 만료일 이후 결과보고서 수령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제 4조 (교육의 진행)

- ① 수탁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월 2회 위탁인의 사업장 또는 위탁인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위탁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인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인은 매월 2회 수탁인의 연구소를 방문하여 수탁인과 협의된 교육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탁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육하여야 한다. 단, 위탁인의 판단에 따라 본 연구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수시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진행은 본 연구용역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일정,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각 2회씩 위탁인의 사업장과 수탁인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서면 합의 가 없는 한 본 연구용역 비용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수탁인은 일체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상호 협조의 의무)

- ① 위탁인과 수탁인은 본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개하여 협력하기로 한다. 다만 제 3자와의 계약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수탁인은 본 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정보를 본 연구용역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타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수탁인이 자신의 업적 공개, 학교 내 실적평가 또는 학회 등에 보고•발표 등의 목적으로 본 연구용역계약의 체결 사실, 연구용역의 과정 및 결과, 본 연구용역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인에게 공개의 목적, 범위, 정보 수령자의 대상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한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인은 자신의 비밀정보가제 3자에게 누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인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연구결과의 귀속)

수탁인이 본 계약에 따른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인에게 제공한 기술 자료, 연구 결과 보고서 등은 수탁인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한 위탁인의 소유로 하며, 위탁인은 자신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자료의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위탁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 ① 본 연구용역의 과정, 연구행위 및 결과물 등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및 그로 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위탁인의 소유로 한다. 단, 본 계약 체결 전(前) 각 당사 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 본 계약에 따른 연구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생된 경우, 수탁인은 지체 없이 위탁인에게 그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인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특허성, 기술적 가치, 선행기술의 여부 등(이하 통칭하여 "특허성 검토")을 검토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를 출원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탁인은 위탁인이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함에 있어 위탁인에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인은 전술한 "특허성 검토"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수탁인이 본 연구용역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은 수탁인의 동(同) 지식재산권 사용이 위탁인의 경쟁사, 고객사 또는 협력사 등을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본 계약 체결 전부터 수탁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한 결과 물을 위탁인의 제품 생산, 판매, 사용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탁인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위탁인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위하여 수탁인과 별도의 라이선스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제 3자와의 연구 제한)

- ① 수탁인은 본 연구용역 계약기간 동안 위탁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제 3자와 공동으로 병행하거나 또는 제 3자로부터 수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 계약기간 동안 제 3자로부터 본 연구용역과 동일한 연구를 의뢰받거나 주문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실 및 내용을 위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수행 여부에 관한 위탁인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한다.
- ② 수탁인이 위탁인의 확인을 받아 제 3자와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도 수탁인은 위탁인으로부터 취득한 본 연구상의 정보 및 결과물을 위탁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

공하지 않으며, 위탁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원을 구성하여 제 3자와의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성과의 발표)

수탁인은 본 연구의 자료, 성과, 결과물 등을 제3자에게 공지하거나 또는 외부에 발표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문서로 위탁인에게 통지하여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인은 자신의 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인에게 공개 정보의 범위, 시기 기타 공개의 조건 등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인의 공개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 정보, 및 본 연구의 성과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상대방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무형의 형태를 불문한다)를 일체의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며,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공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탁인과 수탁인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연구로 취득한 보고서 및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그 원본, 복사물 등을 광고, 감정, 평가, 기타의 선전목록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 ① 위탁인은 수탁인이 본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무의 위반, 태만, 해태, 또는 관련 제반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위탁인이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경우 수탁인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수탁인은 위탁인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위탁인에게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인은 해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 등을 위탁인에게 제출하고 집행 정산에 의하여 연구비를 정산한다.
-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반환 확인서를 상대

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수탁인이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에 제출한 연구 용역의 결과물, 연구 자료 및 성과 등은 위탁인이 지급한 연구용역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으로써 그 소유권은 위탁인에게 귀속된다.

제 12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조 (권리양도의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4조 (계약의 변경)

위탁인과 수탁인은 본 계약서에 언급된 연구 범위 이외의 추가연구나 일부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계 조항을 변경 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은 각 당사자의 정당 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문서에 의하며 변경의 효력은 당해 문서에서 별도 정함이 없으 면 위 문서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한다.

제15조 (계약의 효력 및 해석)

- ① 본 계약의 내용 또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 결정을 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련법령 및 조리에 의하기로 한다.
- ②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계약 체결 이전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대체하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 ③ 별첨 문서 일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별첨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별첨 문서가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제16조 (준거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상법 및 민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는 위탁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전자)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연구계획서 1부



2016 년 11 월 30 일

위탁자: 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대표자: 변정우

연구책임자: 전 진 성

수탁자: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대표자: 김선 재

연구책임자: 이 원 준



